2019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 지침



2019. 2.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1. 지침 수립 목적 및 내용

1-1. 목적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 부여는 '학칙 및 고등 교육법' 에 위반되며,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간주
 - 학교장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나, 위 법률 제5조, 제6조, 제22조에 따른 위반 시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시간강사(겸임)은 적용되지 않고 전임교원만 적용됨에 따른 문제 발생
 - 학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 학점 취소로 졸업이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 법률 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와 교원을 위한 법적인 대응방안이 필요
 - 교수들이 취업자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에 대한 근거를 학내 규정에 마련하여 '청탁' 이 아닌 **'교원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 위반 소지를 제거

1-2. 내용

- □ 학칙시행세칙에 출석과 성적평가 방안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 **제49조(출석)** ① (생략)
 - ②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③ 결석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 5일 이내 기타 :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매 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4	졸업 가능한 최종학기 재학생 이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5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	참가기간(훈련 포함)	경기실적증명서 등				

④(생략)

⑤4호에 의한 출석의 인정은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소속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된 자에 한하며 수업계획서 주차별 학습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2017.11.7.)

□ 제70조(성적평가) ⑦제49조 제3항 4호 해당자도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최고 성적등급은 'B-'까지로 한다.

2. 조기 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세부지침

2-1. 조기취업 신청 및 출석인정

가. 신청대상: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서 취업(창업)한 자
- 2) 당해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계절학기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나. 신청시기

1) 학기 전 취업자 : 개강 후 15일 이내

1) 학기 중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소속학과 심의회의 진행 중 교육적 목적에 의해 조기취업 미승인(반려) 될 수 있음

졸업학점 충족여부 확인	→	취업 사실 통보	→	출석인정신청을 위한 취업관련서류 제출
학생		학생		학생

- 학사관리팀 졸업사정 담당자에게 졸업학점 충족여부 확인
- 졸업학점 충족 시 졸업사정용 성적일람표(담당자 확인 필) 받기
- 강의담당교수, 학과에 취업사실 통보
- 아래의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1. 재직증명서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졸업사정용 성적일람표 (졸업사정 담당자 확인 필)

→	학과 심의회의 진행	
	학과	

-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소속학과 심의회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학생에게 통보

조기추	업 출석인정 신청	}
	(포탈시스템)	
	학과	

- ·학과 심의회의에서 승인 된 학생 서류 일체를 포털시스템 업로드(*12페이지 참조)
 - 1. 재직증명서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졸업사정용 성적일람표 (졸업사정 담당자 확인 필)
 - 4. 학과 교수회의록

1차승인	조기취업자 인정서 발급				
학사관리팀	학과				

· 학사관리팀에 · 승인된 학생의 서는 학과승인 인정서를 건에 대해서 서류 검토 후 "1차 승인" 및 통보

→

- 학과에서 출력 (*14페이지 참조)
- 학생에게 신속 히 배부

라. 출석인정시기

- 1) 1~15주차 중 취업한 재직 시점부터 인정
- 2) 재직 시점과 건강보험 가입 시점이 15일을 초과하여 차이가 날 경우 건강보험 가입 시점으로 인정(ex. 재직일: 3월1일, 건강보험가입일: 3월20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시점부터 출석인정)

마. 출석인정절차

조기취업자 인정서 제출 학생 강의담당교수 과제 제출(포탈시스템) 학생

- · 인정서 수령 후 강의담당교수 (또는 교과목 주관부서)에 제출
- · 강의담당교수는 조기취업인정 서 확인 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학생에게 안내
- · 주차별 수업계획서에 따른 과 제 출제
- 중간 및 기말시험 평가는 정해 진 과제 제출 및 개별 평가를 통해 진행
- 수업계획서에 따라 부과된 과 제를 제출(포탈 과제 업로드 시스 템을 활용, *9페이지 참조)

 →
 계속재직 확인서류 업로드
 →
 계속재직여부 확인

 학생
 학과
 학사관리팀

- 학기 말(6월, 12월) 조기취업자 계속재직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학과에 추가제출
 - 학과에서는 계속재직 확인서류 를 포털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서류 확인 및 승인처리

- 재직자 : 재직증명서

- 창업자 : 매출입세금계산서, 카드체크매출실적조회서 등

- 이직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중도퇴사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출석인정 입력
 →
 성적 입력
 →
 성적 확인

 강의담당교수
 강의담당교수
 학생
 - 조기취업 인정기간 중 주차별 과제 제출 시 출석 인정 (과제확인 *15페이지 참조)
 - 개강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2/3미만자의 경우, 재직기간 이전 또는 이후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2/3이상 여부를 확 인 후 성적입력
- 출석일수, 과제, 시험 등 평가 결과 등을 최종 확인하여 성 적입력
- 조기취업승인자의 최고성적등급은 " **B**- "
-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확인

바. 유의사항

-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해당 인정 사항 전체 무효 처리
- 출석에 관한 사항만 인정되므로 평가를 위한 과제, 시험(중간, 기말) 미실시로 인한 성적 불이익은 학생 책임
- 본 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원칙적으로 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 온라인 교과목은 출석인정처리와 무관하며, 오프라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처리는 가능(모든 교과목에 대한 시험 및 과제는 실시해야 함)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강의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고 이후 출석 은 필히 이행해야 함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에 대해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청대상 아님
-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자격 취득 기준 중 법령에 의거 지정된 교과목 및 이수기준이 명시된 교과목은 조기 취·창업으로 인한 출석/성적 인정이 불가함(단,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과목만으로도 기본이수과 목 이수기준(7과목 21학점 이상)을 충족했을 시 추가로 이수하는 과목은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성적 인정 가능)
- 졸업평점평균 미달자의 경우 당해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조기취업승인자의 최고성적등급 (B-, 평점 3.0)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전체 평점 평균 2.0이상 이여야 신청가능함

─ < 사례 예시 > ──

[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 업 일 : 2019. 2. 1.

- 신청시기 : 2019-1학기 개강일 이후 15일 이내로 신청

- 인정기간 : 2019. 3. 4. ~ 2019. 6. 21.(학기 종료일)

[사례 2] 학기 중에 취업한 경우

- 취 업 일 : 2019. 4. 1.

- 신청시기 : 취업일자로부터 15일 이내로 신청

- 인정기간 : 2019. 4. 1. ~ 2019. 6. 21.(학기 종료일)

[사례 3]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19. 4. 1.

- 신청시기: 취업일자로부터 15일 이내로 신청

- 퇴 사 일: 2019. 4. 30.

- 인정기간: 2019. 4. 1. ~ 2019. 4. 30.

[사례 4] 취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9조 3항에 의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선택할 수 있음

2-2. 취업유형별 제출서류에 따른 구분

	취업구분	중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 직장건강보험 지 - 졸업사정용 성적 ※ 월 60시간 미민 ※ 근로소득에 대한 → 가입 거부 시 ※ 직장건보가입자 ※ 사업장의 직장	병 시 제출해야 될 기본서류) 는 고용계약서(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나격득실확인서(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네일람표(졸업사정 담당자 확인 필) 한자는 직장건보가 아닌 지역의보에 가입하는 단기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자)는 불인정 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직장건강보험'은 필수적 가입(보험관리공단에서 자동 통보 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은 필수 한 여부 : 본인이 고용주나 건강관리공단에 직접 문의 확인 건보 가입이 강제조항(4대 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인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학기말 제출서류) 환명서
	- 이직자 : 재직증	가 기간동안의 매출입세금계산서, 카드체크매출실적조회서 등 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취업자	창(사)업자	공통서류: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서류 개인(법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법인) 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제출 시 신청학기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과세기간별 확정신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ex, 1학기: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 / 2학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 추가제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1년 미만의 사업자)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제출(ex, 매출입세금계산서, 카드체크매출실적조회서) 부동산임대사업자,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사업자는 불인정
	해외취업자	 비자사본 해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91일 이상 고용 계약 한 경우만 해당(취업에 합법적인 비자만 인정) 고용계약 관련서류 고용계약서 형태이거나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근무시간, 계약시작일과 종료일(또는 근로시작일과 자료 발급 시 날짜), 근무형태(풀타임, 파트타임), 직인 혹은 서명 등] 외국인유학생이 외국(본국)에 취업할 경우 고용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직장보험서류,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증명서(또는 영사확인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아포스티유(Apostille): 한 국가의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로써, 협약에 따라 권한 당국이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	농업종사자	• 농업인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제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쳐 등 • 어업인확인서(해양수산부 고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어업종사자 조기취업 중 중도퇴직	법률),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퇴직확인서 또는 재직기간, 퇴직일자가 명시된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 전/후 출석일자와 재직기간 인정 기간을 최종 합산한 총 수업일수 2/3 넘을 경우에는 출석 인정 가능
į	경찰공무원 대용후보자 중 훈련생	•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재학증명서(학기 종강일까지 계속 훈련 중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재 제출 필요) - 훈련 종료 후 수습직으로 발령이 되어야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예외적으로 인정
,	소방공무원 대용후보자 중 훈련생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 재학증명서(학기 종강일까지 계속 훈련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 제출 필요) - 훈련 종료 후 수습직으로 발령이 되어야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예외적으로 인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생 신분 확인서(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4조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청구자			7 6 8 7 6 6
	자격득실 #	1인 내역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직장가입자			

	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	oliita let	
기가나의 가격드기			

- * 이 확인서의 취득인·상실일은 설계의 사업장 업자인·회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태넷통폐이지(www.nin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공연인증서 필요).
- *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으로, 다른 용도(제작증명용, 결칙증명용, 대출용 등)로 사용 시 공단에 범죄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대 가입자 2	사회보험 임내역	확인서		
w 2 m	2:		v	2 4 4		
予世(科号セ) 多	用世出			erw.		
 가당 사이(함 	医鼠疫 经年	E7(@)				0.73
114	a w	25年4条16	사업장 관리번호	4259		机用电压器
वर्णस		科提取对提利				
なな水根		电极外信用				
信報発展		사업함가법적				
2818		사업장가업적				
					the second con-	
▷ [-]한 기업네 ▷ 고울노동부터 ▷ 위 기업네데리 사실의 다음 (단이전의) □ [단재성의]의 [자리취득입] ▷ 고울보험 지리 ▷ 세계성된 지료	에의 확인() '최인생의 '최인생의 '최인성상 라인생의 '최인성상 라인성상 '최연성상 라인성상 '최연 건설 상 보기와 ' 라는 지못한 라 4대보험	이에 되는 가입자에 경약 되지 않는 처음보여 적 가는 사무하라가 함께 금단, 국민건강보육 기관으로 처럼 문제하 305, 건강보육 1507~1 업 및 병역된 등 기본보 및 입습니다. 업무리체를 취해서한 중단에 회원이 해최한 해결이 하는데 회원이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	반의 날인되지 않 다른 없으로 가장 안, 만르륵지금인 시기 바랍니다. 000, 산래보험 1 안인과 사업장(문 반 업무목자를 돼! 제공되는 것이라	합니다. 4억확인은 연호 , 고용노동부의 하는 연간, 고용적 간요자 고용적성 6시한 제공하는 , 다른 용도(제1	합니다. 자료를 기호 현 1360) 선구대상의 전성을 함위	한 작품이다 다니므로 드립니다.
○ [-]한 기업네 ○ 고울노동부터 ○ 위 기업네데리 사설의 다음 (단위전회) ○ [단제성회]의 [자리취득입] ○ 고울보험 지원 ○ 세계보험 지원	에의 확인이 '직인생의 '직인생의 '직인생의 '국민생광' '국민생광' '경우 건설생 '본 지도의 '본	대지 않은 자료로서 적 가는 사무한미국함에 이 급당, 국민건강의회급 기관으로 처럼 문제하 (305, 건강보험 1677-1 업 및 병역업 등 [사건 이 많습니다. 다꾸 확인 등 고통보기 업무족력을 취해서만	반의 날인되지 않 다른 참으로 가입 다. 강로째지공인 시기 여랍니다. 000, 산제보험 인 인건과 사업장(한 전 업무족자를 위 제공지는 강이에 얼음을 날려드립는	합니다. 4억확인은 연호 , 고용노동부의 하는 연간, 고용적 간요자 고용적성 6시한 제공하는 , 다른 용도(제1	합니다. 사용을 기호 현 (354) 선고대상이 전성을 받려 다용병용, 경	한 작품이다 다니므로 드립니다.

는 위 확인시는 4대사회보호 정보안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4대시회보호 공항사인되는 ### Armore or br 1개 [증명에 전하여부 확합] 제하여서 정강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각점로부터 연결하여 가능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2017.1.11.개정)

발급병	선 호	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	즉 시						
성 명(대	표자)		주민(법	d인)등록번호	-(1)				
상 호(법	인명)		사업기	자등 록 번 호					
업	태		종	목					
사 업	장		,l						
					(단위 : 위				
과 서	기 간		매출과세표준(수입	금액)	납부할 세액				
부터	까지	Л	과세분	면세분	(환급받을 세액)				
					1				
					1				
					1				
	Į.								
		위	의 같이 증명합니	다.					
(위 내용·	은 발급일 현	면재 상황으로서 취	후 변경될 수 있습	HCI.					
법 수 번	Ÿ								
남 당 부	서		년 월	일					
참 당	자			세무서장	(인)				
면락	처								

[문제철미의사무천리규천 제15호 서신]

(2017 1 11 제24)

(中/	세청민	원사무	-저리-	H-78	제15.	오ᄷ	141											(201	7.1.	II.A	성)
	발 급	번 호			4	Ľ.	ПL	î	금	(놱	증		명				처	리 2	1 간	
					_	말정	성산	한.	사업	1 자성 1 소득	-	용							즉시	1	
주			소																		
성			명								주	민 :	등	록	번	ż					
																			(단위	: 9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1		o.l	-	법	é	1	명	(-3	상	호)	소 (괴		독 금의 네대상급여액)				총	결	정	세	ō.
귀	속	면	도	사	업	자	등	록	번	Ŷ											
									~ -												
					(납시	사기	ㅏ신:	정한	송명	714	i 면 도	. :	. 1	•	•)					
							무	와	같이	증	병합니	나다.									
3K =	위 내용	유은 빌	급일	현재	상황	으로	서	추 후	변경	될 수	밋송	습니다									
												ų	1	4	윌	ę	2]				
															ķ	1 =	라	1 경	} (인)	
겁수	►번호				۰		는 금액 조하			77 71	· 24.6	}소득·	그야	1/24	2H 2	E =	2011)				
담당	상부서					*	이물	결근	금을	금 공기	하지	않은	금	액인	김		, -1)				
담	당 자								_			바세대· 상해면				박(사	업소	특금역	박)		
	락 처	1			\dashv	- 1	일용	근로:	소득:	작 :	원천경	일수의:	무지	가	소득	세법	제1	64 조	의 -	규정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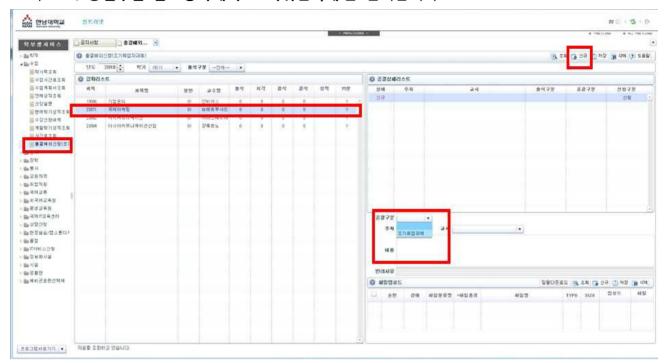
3. 시스템 매뉴얼 (학생)

3-1. 학생화면 - 출석인정을 위한 과제 업로드 매뉴얼

① Hi-Portal 로그인하여 **통합/학사 > 인트라넷 > 수업 > 출결예외승인(공결/조기취업자과제)** 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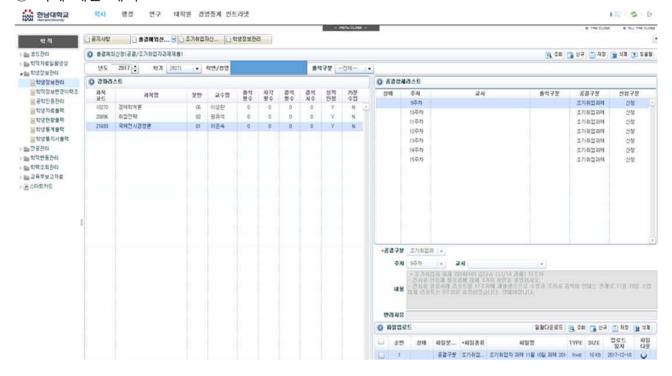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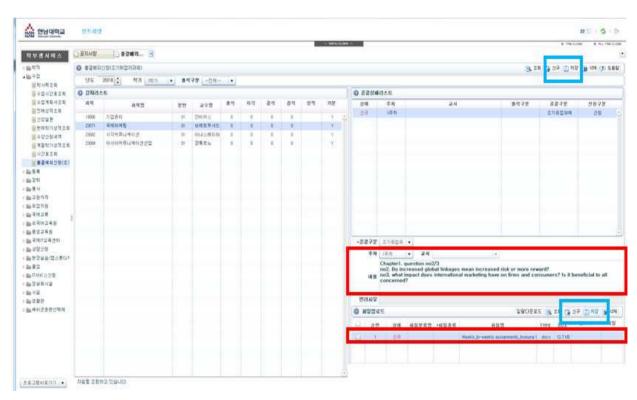
② 수업리스트가 생성되면, 조기취업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신규]버튼을 누르고, 공결구분 콤보상자에서 '조기취업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과제 제출의 해당 주차를 선택하고, 교과목의 과제의 내용 입력 및 파일을 업로드하여 과 제를 제출합니다. (파일업로드 저장 후 상단 저장까지 완료 해야 함)

④ 과제 제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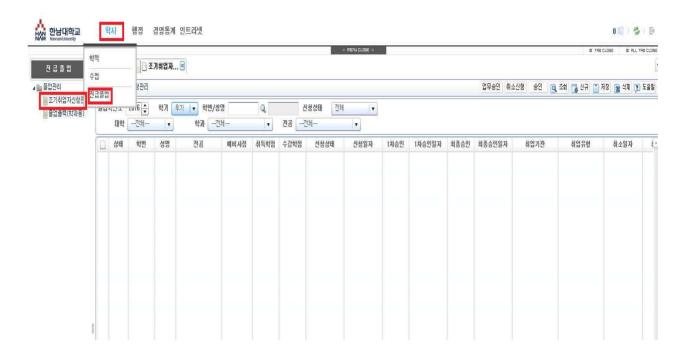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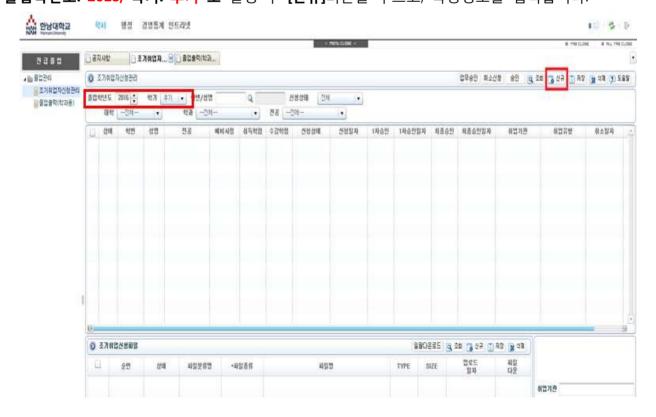
3. 시스템 매뉴얼 (학과)

3-2. 학과화면 - 조기취업자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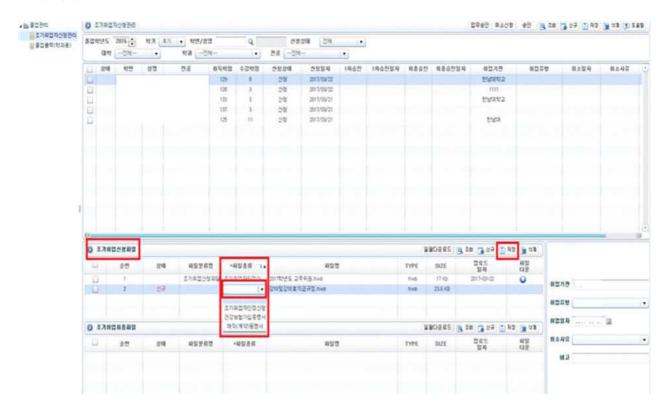
① Hi-Portal 로그인> 통합/학사 > 진급졸업 > 졸업관리 > 조기취업자신청관리를 선택합니다.



② 졸업학년도: 2018, 학기: 후기 로 설정 후 [신규]버튼을 누르고, 학생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파일종류 콤보상자에서 파일종류를 선택한 후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파일 업로드 후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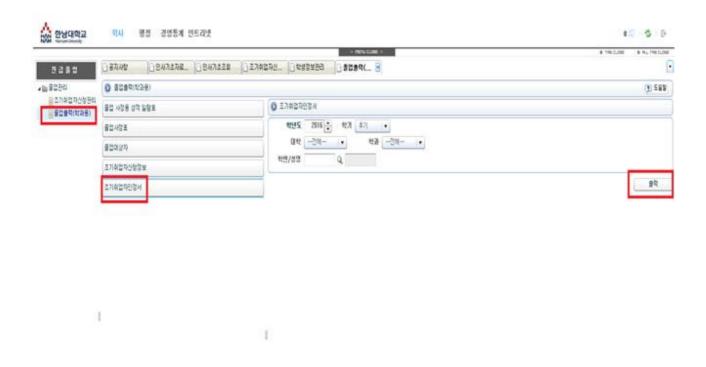


④ 학생정보 및 취업기간, 취업유형, 취업일자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선택합니다.



⑤ 학사관리팀 담당자의 1차승인 안내메일을 확인 후

졸업관리> 졸업출력(학과용) > 조기취업자인정서 > 학년도, 학기, 학번 입력 > 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조기취업자인정서 발급)



※ 1차 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취업 인정을 취소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과에서는 학사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시스템 매뉴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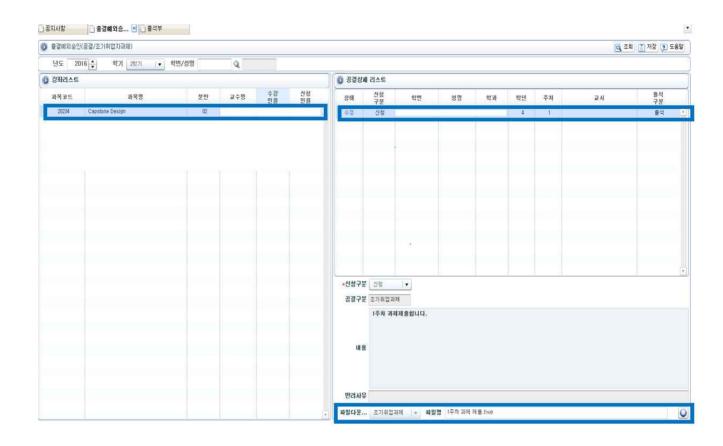
3-3. 교수화면 - 과제 확인 방법 매뉴얼

① Hi-Portal 로그인하여 **[통합/학사] > [인트라넷] > [교수서비스] > [수업] > [출결예외승 인(공결/조기취업자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담당 교수의 강좌리스트가 생성되고 선택한 교과목의 조기취업자 과제 조회 및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매뉴얼 (교수)

3-4. 교수화면 - 계속재직여부 확인 및 성적입력 매뉴얼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부여기준 안내

조기취업 신청 승인	최종 승인 (계속 재직여부 확인사항 반영)	※성적입력 화면 구분	구분 기준	최고 성적 등급	비고
0	0	"승인"	개강일로부터 재직기간 합 산 수업일수 2/3 이상 인 경우	B-	- 조기취업 인정기간 중 주 차별 과제 제출 시 출석 인
0	×	"신청"	개강일로부터 재직기간 합 산 수업일수 2/3 미만 인 경우(중도퇴사자 포함)	B-	정 - 개강일로부터 재직기간 합 <u>산 2/3미만의 경우, 재직기간</u> 이전 또는 이후 출석일수를
0	×	"취소"	개강일로부터 <u>재직기간 합</u> 산 21일 미만인 경우	A+	합산하여 2/3이상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해야 함

※성적입력 화면 구분 예시

